

15. 전과

학생이 현재 소속학부(과)를 변경(이하 “전과”라 한다)하고자 하는 경우

가. 전과의 시기: 년 2회(하계, 동계)

나. 허용범위

- 1) 전과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%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. 다만, 사범대학 각 학과 및 보건 계열 학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의하여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.
- 2) 제1항에 의한 전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학사단위 구조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통합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할 때는 그 허용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3)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

다. 지원 자격

- 1) 학년별 자격 기준

전과 학년	기 준	비 고
2학년 전과	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	※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로의 전과는 2학년에만 할 수 있음 ※ 편입생은 4학년 전과만 지원 가능
3학년 전과	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한 자	
4학년 전과	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한 자	

- 2) 미래융합대학으로의 전과는 전입학기 개시일 기준 만 30세 이상 또는 특성화고(실업계)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만 가능하다.

라. 신청 방법: 학생포털서비스(inSTAR) > 전과신청 > 전과신청서 작성 및 출력 > 현재 학과 및 전입학과에서 학과장 상담 후 확인 서명 > 전과 신청서를 스캔하여 inSTAR에 업로드

마. 전형 및 선발

- 1) 전과는 전적 학과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거나 학과별로 면접고사, 필기고사, 실기고사 중 선택적으로 추가 전형을 부가하여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.
- 2) 교무처장은 전과의 시기, 선발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전과 개시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다.
- 3) 전형 및 선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과 모집요강으로 정한다.

바. 전과의 취소

전과를 허가 받은 자가 전과를 허가 받은 후 첫 학기 시작일 전까지 전과취소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사. 전과 이후의 교육과정이수

- 1) 전과를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2)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과 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다만, 전입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,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.
※ 동일과목 인정은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일 과목 인정 신청을 하고,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입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- 3)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,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아. 기타사항

- 1) 전과를 할 경우 전과 직전 학기의 성적에 의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(장학순위는 전적학과의 기준임)
- 2)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취소함